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금의 성격분석:6대 도시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Funds of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6 Major Cities

성향숙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Hyang-Sook Sung(hssung@cup.ac.kr)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6대 도시 사회복지기금 규모 및 성격 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기금의 현주소를 구체화하고, 사회복지기금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과 학술적 연구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기존의 기금관련 연구는 연금과 같은 거대기금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구로 작동할 수 있는 지자체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한 연구 성과가 미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기금규모(기금조성액 및 집행액 추이, 기금계정별 규모와 일반회계 규모 비교), 기금사업 성격(기금계정별 기금사업규모 비교, 기금계정별 사업내용, 기금계정별 예산성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기금운용의 유지, 축소, 확대 3유형에 따라 기금규모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금과 일반회계 규모를 비교하였을 때 기금은 일반회계의 0.02~1% 규모로 미비하였다. 셋째, 기금사업은 자활중심의 빈곤감소 성격이 강하였다. 넷째,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금과 여성기금이 혼재되어 사회복지기금의 정체성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다섯째, 기금사업은 일반회계사업과 달리 민간이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금규모 증대, 저소득층 빈곤감소를 위한 자활사업의 다각화, 사회복지기금 정체성 확립,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확립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사회복지기금 | 지자체 | 기금규모 | 자활 | 일반회계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earn current state of social welfare funds of 6 major cities, and to find better ways to execute those funds as well as to facilitate studies on them. So far, the studies on funds were limited to those on large ones such as pension, yielding scant number of studies on local ones, which could be the practical tools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area. To do this, I analyzed the scale of the funds (i.e. the amount of the funds raised, the amount changes in fund execution, and the comparison of the scale between each fund accounts and general account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und programs (i.e. the comparison of scales of fund programs of each fund accounts, the content of the programs of each fund accou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dget of each fund accounts). The result shows that 1) the scale of the funds changed accordingly as they were maintained, curtailed and expanded; 2) the scale of the funds were 0.02 ~ 1% of that of the general accounting; 3) the fund programs were mostly for decreasing poverty, centered on self support; 4) the social welfare funds and the funds for women were not clearly separated in some local governments, instigating the arguments on the identity of social welfare funds; and 5) the fund programs were run by civil organizations, different from general accounting programs. Based on the findings, to efficiently utilize the social welfare funds, I suggest 1) expansion of the fund scales; 2) diversification of the self-support programs to decrease poverty; 3) specification of the identity of the social welfare funds; and 4) establishment of the public and civil governance.

■ keyword : | Social Welfare Fund | Local Government | Self Support | General Account |

접수일자 : 2016년 10월 10일

수정일자 : 2016년 11월 04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1월 14일

교신저자 : 성향숙, e-mail : hssung@cup.ac.kr

## I. 서론

기금은 긴급하거나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회계의 별도재원이다[1]. 국가 재정법 5조에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금 관련 연구는 국가 단위의 연기금, 복권기금 등 거대기금에 집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소액 운용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부족하다. 그러나 다양한 학술연구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직면하고 있는 청년실업, 저출산 및 고령화 등의 문제에 대하여 기금 설치를 통한 해법을 제시하는 등 기금의 현실적 기능에 대한 많은 제안은 있어왔다. 예를 들면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이민자사회통합기금[2], 부산의 청년실업으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실업극복을 위한 청년고용기금[3] 설치를 주장하는 등의 연구가 있다. 이처럼 기금은 국가 혹은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중앙 집중적 연구풍토와 지역의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저변에는 감사원도 지적하였던 것처럼 기금은 실질적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어서 기금의 수입지출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4], 또한 2005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이전에는 지방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통합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개별 기금에 대한 자료 접근성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5].

2015. 8월에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지방공기업사업의 민간이전, 예산낭비사례보고 등 지방재정개혁을 위한 강력한 추진을 밝혔다. 사회복지와 관련하여서도 지난해 8월에 개최된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유사·중복 복지사업 1,496개를 정비하여 복지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6].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비 추진은 결국 국비절감, 지자체 예산절감을

꺼내기 위한 재정적 압박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기금은 지방정부의 예산에서 조성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적 압박은 기금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은 부산(28.1%), 인천(39.9%), 대구(28.8%), 태백(34.4%)를 예비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 한 바 있고[7], 또한 지방재정 악화에 따라 지방기금 조성 규모가 2008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는 것도[8] 지역의 기금이 처한 현실적 조건이다.

사회복지는 구체적 인간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역 혹은 행정단위로써의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성격을 갖는다. 사회복지기금 역시 지자체의 출연금, 지자체 예산절감, 기업 등의 모금으로 기금마련이 가능하고, 조성된 기금은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전략적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향후 지방재정의 압박이 심화되면, 지방기금의 의도적 축소에 따른 기금사업의 위축이 우려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의 기능적 적확성과 정체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사회복지기금 운용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지방 기금의 성격

국가재정법 5조에 의하면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제2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금의 특성은 무엇보다 사업의 성격과 재원의 특성이 연계되어 있으며,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다[9]. 그러나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과의 연계성을 전제로 하

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을 특정한 자금으로 보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금설치 근거법에는 기금에 대한 재원으로서 정부 출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데, 이는 기금의 설립취지와 모순이라는 지적 [10]도 있다.

지방기금과 일반회계를 비교해 보면 기금의 특징이 더욱 드러나는데,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각종 기금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일반회계 사업은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급부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기금사업의 관리주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지만, 일반회계사업은 지치단체장이 예산안 편성 후 지방의회 심의·확정을 통해 사업이 확정된다. 또한 기금사업의 집행에서도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받는 데 비하여 일반회계사업은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되거나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다[11].

## 2. 지자체 사회복지 기금 특성

2015년 현재 우리나라 기금은 총 66개 중앙정부 기금 [12]이 있으며, 기금규모는 총 504.7조원으로 이중 사업비는 128.7조, 여유자금운용은 173.8조이다[13]. 이에 비하여 지방 기금은 총 2,380개, 16.4조원이 조성[14]되어 있다.

지자체에서 운용되는 사회복지기금의 성격은 중앙정부에서 운용하는 사회복지기금과 판이하게 다르다. 지자체의 다양한 기금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금을 단일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하되, 하위 계정을 만들어 각각 별도로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전국 7대 도시(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현황은 [표 1]과 같고,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울산에서는 유사한 형태의 사회복지기금이 운용되고 있지만 대전은 사회복지기금이 운용되고 있지 않다. 단지 유사한 기금이라 할 수 있는 여성발전복지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사업대상과 내용이 여성,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성발전과 여성단체 지원 성격의 여성발전기금과 한부모 다문화 가족지원이라는 사회복지기금 성격이 복합되어 있다. 즉 일반적 사회복지기금으로 규정하기에는 정체성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복지기금 관리 형태는 사회복지일반, 자활,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정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광주와 대구는 계정형태가 아닌 분야 혹은 자금이라는 명칭으로 기금의 사용처를 구분하고 있지만 통합 운영되고 있다. 셋째, 기금지급 방식은 대체로 현금지급(장학금지급, 긴급소액대출, 자립정착금 등), 용자금지원(임대보증금 등), 단체 및 시설운영 지원, 사회복지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넷째, 기금사업 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전통적 사회복지 대상자가 주요 대상자이며 아동이나 가족은 제외되어 있다. 지원대상은 개인과 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1. 7대 도시 사회복지기금 현황 및 사업목적

	계정(분야)	사업 목적	비고
서울	노인복지계정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복지계정	장애인 사회활동 및 자립자원을 통한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 증진	
	자활계정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	
	주거지원계정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및 공모사업	
부산	사회복지계정	저소득층 복지증진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저출산대책기금별도 설치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인천	사회복지계정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필요비용 지원	
	기초생활보장계정	기초자활지원계획의 집행 및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노인복지계정	노인복지 및 화관관리 지원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	
대전	여성발전	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의 성격이 복합되어 있음
	한부모가족복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	
	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광주	기초생활보장(자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탈수급 유도	-통합운용
	노인복지(자금)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영역을 위한 노인복지증진 사업	-장애인복지기금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
	한부모가족지원(자금)	저소득주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의욕 고취	
대구	생활보장(분야)	지역어촌에 부합하는 저소득주민 노	-통합운용
	노인복지(분야)	인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장애인복지(분야)	저소득에 유연하게 대응	
울산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대상사업	
	노인복지계정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저출산대책계정	자녀의 출산과 보육 시책사업	

출처: 7대 도시 각 기금운용계획(2016)에서 재구성함

### III. 연구방법

첫째, 분석과정과 분석내용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기금규모는 지난 5년간 기금조성액과 집행액 추이를 비교함으로써 증가, 감소, 유지 추이를 파악해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 계정별 규모와 일반회계 예산과 비교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 기금규모를 파악하였다. 둘째, 기금사업성격을 밝히기 위하여 기금계정별 기금사업규모를 비교하였고, 계정별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을 분석하였다. 특히 기금사업의 내용과 성격을 분석함에 있어 기획재정부(2016) 기금준치평가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성·유사성 영역에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타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중복성·유사성, 타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은 이미 기금운용평가를 통해 중복성과 유사성이 없다는 평가를 득하여야 기금운용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본 연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기금의 특성상 일반회계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기금사업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 기금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대전은 타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는 명시적 사회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대신 여성발전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다. 이 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이 복합되어 있는 이중 정체성을 가진 특성으로 인하여 동일하게 비교하기 어려워 본 연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지방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기금의 특성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금규모, 기금운용기간, 기금유형(성격)이 아울러 분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금운용기간을 제외하였다. 기금운용기간은 기금운용에 따른 경험이 기금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한 것인데 일 연구에 의하면 기금운용기간과 기금성과는 연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15], 본연구와 관련하여서는 경험을 다룰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병행하기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섯째, 분석 자료는 6대 도시의 2010~2016년 기금 운용계획, 2015년도 일반회계예산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백서, 기획재정부의 열린 재정에서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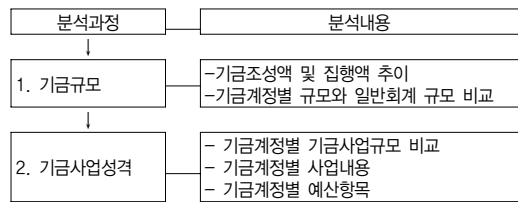


그림 1. 분석틀

### IV. 분석결과

#### 1. 사회복지기금 규모 및 재정위기

##### 1.1 기금조성액 및 집행액 추이

현재 우리나라 6대 도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은 아래 [표 2]와 같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2015년 현재 기금 잔액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는 서울이며, 대구, 광주, 울산, 부산,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기금규모의 변화추이를 보면, 기금증가(광주, 울산), 현상유지(부산, 인천, 대구), 감소(서울) 양태로 구분된다. 각 유형별로, 기금이 증가하고 있는 광주, 울산은 기금집행액을 점차 줄이는 방식으로

표 2. 연도별 기금조성액 및 집행액 추이(단위: 천원)

	2011			2012			2013			2014			2015(단위: 천원)			2011년 대비%
	조성액	집행액	잔액	조성액	집행액	잔액	조성액	집행액	잔액	조성액	집행액	잔액	조성액	집행액	잔액	
서울	7,249,949	49,451,800	38,560,000	33,427,203	31,712,000	10,351,570	26,395,000	30,065,008	21,727,510	23,289,066	31,277,341	46,721,006	89.12			
부산	1,970,201	2,843,744	964,327	1,901,914	2,546,944	2,466,889	2,132,144	1,282,667	2,013,580	1,320,339	2,020,580	9,580,406	99.34			
인천	430,875	595,682	960,665	394,722	602,932	388,208	467,907	378,999	570,000	223,819	216,000	9,132,564	95.09			
광주	728,232	346,465	8,608,533	317,596	765,903	455,350	521,556	631,123	885,007	533,647	606,800	10,758,834	124.97			
대구	572,458	294,000	10,690,684	646,138	452,600	575,941	464,543	576,598	364,500	291,028	337,500	11,210,245	104.85			
울산	200,677	270,000	765,075	150,607	107,000	278,807	70,000	49,861	0	53,343	70,000	1,000,693	130.79			

자료: 6대 도시별 기금운용계획(2011~2015 각 년도)에서 재구성

기금 적립규모를 늘여왔다.

부산, 인천, 대구는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기금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데 이 세 지자체는 2015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 재정위기자치단체로 지정받은 곳(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기금은 지방정부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므로 지방재정위기는 곧바로 기금의 취약함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보수적이고 안정적 기금관리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은 타 지자체보다 기금규모가 크며 또한 지난 5년간 기금집행액이 가장 높았던 2011년에 근접하게 2015년에는 집행액 규모를 회복하면서 지난 5년간 조성된 기금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2 기금 계정별 규모: 일반회계와의 비교

계정별 기금의 특성에 따라 일반회계사업이 보다 효율적인지, 기금사업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지자체의 각 담당부서 기금심의위원회와 지방의회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기금계정별 사업목적과 내용에 대한 적합성을 본 연구에서 논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기에서는 [표 3]에 보이는 것처럼, 기금계정별 크기를 일반회계사업과 비교해봄으로서 지자체의 기금계정별 상대적 규모과악과 지자체의 역점 기금사업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첫째, 기금규모를 일반회계예산규모와 비교해 보면, 서울은 사회복지기금이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부서의 일반회계예산 대비 1%정도 규모를 운용하고 있어서 비교적 규모의 효율성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여타 지자체는 사회복지기금이 일반회계 예산 대비 0.1%(부산), 0.05%(광주), 0.02%(대구, 인천)등 아주 미미한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둘째, 기금계정별 규모와 기금계정 간의 상대적 크기를 살펴보면 먼저, 서울은 앞서 보았듯이 사회복지기금이 일반회계 대비 1%의 규모로 여타 지자체의 사회복지기금에 비하여 크지만, 세부적으로는 주거지원 기금이 가장 크고 이 규모는 주택정책과 일반회계의 3.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울은 기금을 활용한 주거문제 해결에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산은 일반회계 대비하여 장애인 복지기금이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되어 있는데 자활기금, 특히 노인복지기금에 비하여 10배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광주와 대구는 각각 기초생활보장, 생활보장이 일반회계 대비하여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사업으로 나타났다.

표 3. 기금계정별 일반회계 대비 규모 (단위: 천원)

	기금계정	기금집행액(일반회계대비%)	과/일반회계(세출)*
서울	총액	31,277,341 (1.03)	3,015,293,982
	노인복지	924,130 (0.06)	어르신복지과 1,585,549,296
	장애인복지	5,080,000 (0.79)	장애인복지정책과 167,683,073 장애인자립지원과 473,124,192
	자활	867,000 (0.79)	자활지원과 110,213,712
	주거지원	24,406,211 (3.40)	주택정책과 678,723,709
부산	총액	2,020,580 (0.11)	1,838,176,774
	자활	710,000 (0.09)	사회복지과 748,529,056
	사회복지	308,000 (0.04)	
	장애인복지	713,980 (0.30)	장애인복지과 236,612,395
	노인복지	288,600 (0.03)	고령화대책과 853,035,323
인천	총계	216,000 (0.03)	832,085,424
	기초생활보장	70,000 (0.03)	사회복지봉사과 278,249,257
	사회복지	86,000 (0.02)	
	노인복지	60,000 (0.01)	노인정책과 553,836,167
광주	총계	606,800 (0.05%)	1,065,482,086
	기초생활보장	410,800 (0.16)	사회복지과 260,117,577
	노인복지	150,000 (0.03)	노인장애인복지과 415,766,807
	한부모가족	46,000 (0.01)	여성청소년가족정관 389,597,702
대구	총계	337,500 (0.02%)	1,166,015,759
	생활보장	200,000 (0.04)	복지정책관 439,876,076
	노인복지	77,500 (0.01)	어르신복지과 544,242,412
	장애인복지	60,000 (0.03)	장애인복지과 181,897,271
울산	총계	1,070,693	

\*일반회계와 기금은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음 / 일반회계는 기금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해당 부서의 예산지출을 총합하여 일반회계규모를 산정하였음  
-자료: 6대 도시별 홈페이지 공시 일반회계 예산자료를 재구성하였음

## 2. 지자체 사회복지기금사업의 성격

6대 도시에서 운용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 계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 2.1 자활중심의 기금사업

지자체별 자활기금의 성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자활기금의 계정 형태와 용도에 있어 서울, 부산은 독자적 자활계정을 갖고 있지만 인천은 기초생활보장계정, 광주는 기초생활보장자금, 대구는 생활보장분야, 울산은 자활계정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계정에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대체로 전세, 점포임대 용자사업에 한정되어 있다.

표 4. 사회복지기금 계정별 집행액 변화추이(단위: 천원, %)

	계정	2013년(%)	2014년	2015년
서울	총액	26,395,000	21,727,510	31,277,341
	노인	1,413,000(5.35)	1,028,500(4.73)	924,130(2.95)
	장애인	6,115,000(23.16)	5,705,000(26.25)	5,080,000(16.24)
	자활	1,463,000(5.54)	979,800(4.50)	867,000(2.77)
	주거	17,404,000(65.93)	14,014,210(64.49)	24,406,211(78.03)
부산	총액	2,132,144	2,013,580	2,020,580
	자활	1,310,000(61.44)	1,110,000(55.12)	710,000(35.13)
	사회지	308,000(14.44)	308,000(15.29)	308,000(15.24)
	장애인	349,544(16.39)	401,980(19.96)	713,980(35.33)
	노인	164,600(7.71)	193,600(9.61)	288,600(14.28)
인천	총계	-	-	216,000
	기초생활보장	-	-	70,000(32.40)
	사회복지	-	-	86,000(39.81)
	노인	-	-	60,000(27.77)
광주	총계	89,575	-	606,800
	기초생활보장	27,575(30.78)	-	410,800(67.69)
	노인	35,000(39.07)	-	150,000(24.71)
	한부모가족	27,000(30.14)	-	46,000(7.58)
대구	총계	464,543	364,500	337,500
	생활보장	300,043(64.58)	200,000(54.86)	200,000(59.25)
	노인	104,500(22.49)	104,500(28.66)	77,500(22.96)
	장애인	60,000(12.91)	60,000(16.46)	60,000(17.77)
울산*	총계	70,000	0	70,000
	기초생활보장	70,000(100)	0	70,000(100)
	노인	0	0	0
	저출산대책	0	0	0

자료: 6대 도시의 각 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에서 재구성하였음.  
 인천(2013,2014)과 광주(2014)자료는 기금총액은 공시되어있지만 계정별 자료는 공시되어 있지 않아서 담당부서에 요청하였지만 자료가 없거나 협조받지 못하였음.  
 \*참고로 울산의 경우, 2012년에 노인계정 집행액은 70,000 이었고 기초생활보장계정(자활공동체 전세점포임대)은 100,000지출되었음.

둘째, [표 4]에 따른 각 지자체별 자활기금의 특성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자활기금 규모는 서울 2.77%, 부산 35.13%를 차지하고 있고 인천 32.4%, 광주 67.69%, 대구 59.25%, 울산 100%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은 저소득층 대상의 임대보증금을 용자하는 주거지원계정이 기금의 78.03%를 차지하고 있고, 노인복지계정과 자활계정은 3% 미만인데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부산은 고령화지수가 가장 높은 지자체이지만 노인대상 기금지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현재 14.28%로서 지난 3년간 1.85배 증가하였다. 반면 장애인 기금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과 장애인복지 기금계정의 증가분은 자활기금의 감소 추세와 맞물려 있다. 그러나 자활과 사회복지계정을 합하면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 장애인 개별 대상의 지출보다 일반 저소득층 대상 기금지출이 50% 이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은 각 계정별로 분산되어 있지만 타도시의 자활계정과 유사한 사회복지계정지출이 대략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와 대구, 울산의 기초생활보장 분야/계정 기금(내용상으로는 자활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타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데, 광주의 기초수급자는 2014년 기준, 59,598명으로[16] 기초수급자 비율이 각 지자체 인구 대비 1위로 가장 많은 기초수급자가 있는 지역이다. 또한 자활계정과 유사한 기초생활보장이 2015년 현재, 2013년 대비 2.19배 증가한 것에 비하여 한부모 가족지원은 약 4배가량 축소되었다.

대구에는 장애인분야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지만 여전히 자활사업단 지원의 생활보장 분야가 59.25%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대비 기초수급자가 93,539명으로[17] 대구 전체 인구대비 3.76%이다. 앞서 본 광주와 대구는 각 지자체 인구대비 기초수급자 비율이 6대 도시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활계정, 또는 기초생활보장분야의 사회복지기금이 많이 지출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울산은 기초수급자 비율이 6대 도시 중 가장 낮지만 노인과 저출산 대책에 전혀 기금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자활기금의 성격을 갖는 기초생활보장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다.

결론적으로 서울처럼 주거지원에 집중하는 예외적 사례도 있지만 이 또한 타 지자체의 자활지원과 저소득층지원을 통한 빈곤해소 역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한국사회에서 빈곤해소 문제는 여전히 사회복지 기금 지출에서 중요한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 2.2 사회복지기금과 여성기금과의 정체성 혼재

대전, 광주, 울산의 사회복지기금은 여성발전기금의 기금대상과 혼재되어 있다. 대전의 사회복지기금은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어 구체적 언급의 필요성은 없지만, 여성발전복지기금이 운용되고 있다. 광주는 한부모가족지원계정, 울산은 저출산 대책계정이 운용되고 있다. 부산에서는 여성발전기금과 달리 한부모가족지원 기금과 출산장려기금이 각기 독립된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특히 여성발전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의 성격이 유사 혹은 중복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폐지의 위기가 있었는데[18], 부산 여성계는 부산여성발전기금과 모자복지기금의 통합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여성발전기금 성격을 사회복지기금 성격과 분리하여[19] 여성발전기금의 정체성을 정립시킴으로서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다. 그러나 울산의 경우처럼 저출산 대책을 위한 기금이 사회복지기금 안에 분류되어 있는 것은 사회복지기금 운용에서 예외적 현상이며, 일반적으로 출산지원 정책이 복지제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출산정책은 복지정책과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그럼에도 울산의 경우, 두 기금의 성격과 정체성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 때문에 사회복지기금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2.3 기금사업의 지출항목 성격

기금사업과 일반회계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국/과/계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반회계사업의 구성은 ① 자활,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예산사업으로 국시비가 매칭되는 보편적 복지사업(생계급여, 사회복지시설지원,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②장애인과 노인대상의 서비스 제공 사업은 대체로 민간이전과 자치단체 이전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그 외 일부는 인건비,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지자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특정목적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15.07월 개정(2016.1.1.일 시행)되면서 신설조항으로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5년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기금사업은 일반회계사업과는 내용과 성격이 달라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장애인과 노인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명으로는 동일 대상의 예산사업과 기금사업 간의 명확한 성격구분을 할 수 없지만 지출항목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표 5. 지자체 기금사업명 및 예산항목

	기금분류	기금사업내용*
서울	노인복지	(사업보조**)어르신체육대회,(자치단체경상보조)세대통합 공모지원, (사업보조)노인봉사단운영
	장애인복지	(옹자금)저소득층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사업보조)장애인단체 공모지원,
	자활	(위탁금)자활상품박람회등지원, (옹자금)자활기관용자지원, (민간위탁금)자활중사자교육
	주거지원	(통화금)공기관(옹자금)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운용, (수혜금)저소득층 월세임대료 보조금지급
부산	자활	(옹자금)자활기금 등 점포임대 및 사업자금용자
	사회복지	(일반보조금)저소득자녀 고등·대학생 장학금 지원
	장애인복지	(사업보조)중증장애인체험휴식 지원, 장애인문화복지 p/g지원, 장애인쇼핑몰창업센터 지원
인천	노인복지	(법정운영비 보조)노인단체지원, 노인행사지원, 노인교육p/g 지원
	기초생활보장	(민간옹자금)창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대여
광주	사회복지	(연구운영비)인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영역비, (사무관리비)사회복지홍보책자제작
	노인복지	(민경보)노인단체구급회사업비지원,(상동)노인건강증진, (상동)노인지도자교육
대구	기초생활보장	(사업보조)자산형성지원, (옹자금)자활기업전세점포임대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희망키움통장사업 민간수행기관지원
	노인복지	(사업보조)노인복지증진사업
울산	한부모가족 지원	(수혜금)저소득한부모 임대보증금지원
	생활보장	(옹자금)자활기업·사업단 임대보증금 용자, (민경보)자활사업활성화
	노인복지분야	(민경보)노인공동작업장운영지원
울산	장애인복지	(민경보)시설장애인직립정착금 지원
	기초생활보장	(옹자금)자활공동체점포임대자금 용자
울산	노인복지	사업비 지출이 없으며 시금고에 여유자금 예치
	저출산대책	

자료: 6대 지자체별 기금운용계획(2015)에서 재구성  
 \*계정별 사업비가 큰 1-3 순위 사업 제시  
 \*\*민경보: 민간경상보조 / 단체경보: 자치단체경상보조 /  
 옹자금: 민간옹자금 / 위탁금: 민간위탁금 / 수혜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 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6대 도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사업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사업의 예산지출 항목을 분석한 결과, 아래 [표 5]에서 제시한 전체 34개 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사업 20개, 민간융자금 사업 7개,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사업 1개, 자치단체 이전사업 1개,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업 3개, 연구용역비, 사무관리비 각각 1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결국, 민간이전, 민간융자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합하면 전체 사업대비 88% 가량의 사업이 민간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일반회계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와 달리 기금은 민간이전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V. 논의 및 결과

### 1. 논의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지난 5년간 지자체의 기금운용은 증가, 현상유지, 감소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광주, 울산은 기금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금을 증대시키고 있고, 부산, 인천, 대구처럼 재정위기관체로 경고 받은 단체들은 기금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기금사업 규모는 현상을 유지하되, 이자수입 내에서만 사업비를 지출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기금운용을 하고 있다. 결국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기금운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기금 조성 시에 기금 조성액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 3년간 6대 도시에서 국고보조금은 0%였다. 또한 지자체별 사회복지기금의 80~90%가 전입금이며 나머지는 이자수입으로 구성된다고 할 때, 지방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기금출연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은 경감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이 필요한 선결조건이다.

그러나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기금을 형식적으로 유지하기보다 지역주민의 빈곤해소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기금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기금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금조성 규모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복지지출을 위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연계되고 결국 지방소비세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없이는 기금의 적극적 운용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크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복지재정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공평한 재원분배 비율(8대2의 비율임)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현격한 재정격차해소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재원분배에 역점을 두어서는 지자체의 재정확충의 문제를 단기간에 풀기 어렵다. 따라서 자주재원인 지방세 확보 보다 현실적으로는 지방 소득세와 지방소비세 개편이 보다 용이할 수 있다[20]. 특히 지방의 복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재 2010년에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에 양여하고 있지만 그 비율을 20~30%대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한 법안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21]. 복지재정의 확충을 통한 방안 외에도 지자체의 각 중견 기업체들도 기금출연이 가능하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적극적 의지가 중요하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지자체 기금 운용의 주요 방향은 순수하게 자활을 지원하는 자활계정, 자활과 복지증진의 성격을 겸비한 생활보장·기초생활보장 등 명칭에 상관없이 자활지원을 통한 빈곤해소에 초점이 있으며 한국사회에서 빈곤문제는 여전히 사회복지기금 지출에서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사업종류가 2012~2014년 평균 2,795개로서[22] 대체로 저임금 저숙련 단순노동으로서 탈빈곤하기 어려운 직종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 중에서 자활기금의 사용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대여 및 전세점포임대료 위주로 지출하고 있어서 다양한 자활사업 참여자 및 저소득층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세점포임대료의 경우, 임대료 및 보증금의 성격이 강해 원금 회수율이 높은 항목에 대한 사용으로[23] 자활기금 운용이 탈빈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운용되기보다 보수적이고 안정적 운영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기금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대전의 사회복지기금은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여성발전복지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광주주는 한부모 가족지원계정이 있고 울산은 저출산 대책계정이 따로 운용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의 기금 정체성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는 여성대상의 기금을 사회복지기금의 하위계정으로 운영함으로써 유사 기금의 중복운영이라는 논란은 피하고 있지만, 기금 정체성에 대한 또 다른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성대상의 기금을 복지적 성격과 여성발전의 성격을 명확히 한 뒤 여성발전 성격의 기금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여성발전기금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금의 적정규모를 지자체 여성정책 담당부서에서 창출해내야 하지만 사실상 쉽지 않고, 사회복지부서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시에 부처 이기주의란 비난에 처할 우려가 있다.

넷째, 기금사업은 일반회계 사업과 내용적으로는 사업의 성격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거나 일반회계사업의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지출항목은 명확하게 민간이전적 성격이다. 문제는 기금사업 지출은 민간이전 성격으로서 사업주체가 민간일 뿐, 사업내용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빈곤해소를 위한 자활 혹은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점에서 일반회계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 기획예산처는 여성발전기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고 일반회계사업과 차이점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기금사업을 일반회계사업으로 이전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다[24]. 또한 최근 부산은 사회복지기금 효율성 평가결과, 기금을 회계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예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25].

이러한 권고와 지적은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여전히 기금사업이 민간이전적 특성을 잘 유지하면서 빈곤감소에 적극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면 기금을 보다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 보듯이 기금규모 자체가 일반회계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금사업을 통한 빈곤감소의 기능은 미약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기금사업은 보충적 복지서비스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금 규모가 회계사업 예산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과 민간의 수평적 거버넌스 실현에는 한계가 분명하지만, 민간에로의 기금지출을 통한 민간 참여의 사업방식은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구축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2. 결론

본 연구결과로 현재 사회복지기금의 규모와 사업내용이 법에서 정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해당 지자체 주민 특히 빈곤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능적 역할을 제한적이거나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지방소비세 배분을 인상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의 중견 기업이 사회복지 기금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빈곤해소를 위한 자활 및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다각화를 통한 저소득계층의 욕구충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자활실무자, 마케팅 등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하여 빈곤계층의 욕구를 대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동시에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여 빈곤계층의 탈빈곤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금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기금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유사기금과의 중복성 해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현재처럼 민간이전 성격을 바탕으로 한 기금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 간의 수평적 거버넌스를 통한 기금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민간과 공공의 거버넌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의 주체인 지자체가 외부환경 즉 기금사업 참여 기관, 법적 뒷받침을 받고 있는 시의회, 기금 관련 전문가 그룹 등과 협력적 관계 속에서 기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량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기관과 지자체 간의 수평적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민주적 역량과 기금사업 수행의 전문성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시의회는 기금사업의 성과를 3년 단위로 지자체로부터 성과 평가를 보고받게 되는데, 형식적인 보고가 아닌 지자체와 의회 간의 토론과 논의를 통하여 기금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앞서 3장 연구방법에서 서술하였던 바와 같이, 기금규모, 기금의 성격, 기금운영기간과 경험의 축적 등에 관한 다면적 연구가 뒷받침 될 때 사회복지기금의 입체적 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바람직한 기금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본 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회복지기금 운용의 경험 뿐 아니라 기금수행 주체가 되는 지자체의 조직적 역량, 기금사업 참여 민간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기금사업의 환경이 되는 전문가 그룹 및 의회의 법제도적 개선노력, 관련 NGO와 협력방안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갖는 학문적 차원에서의 의의는 선행연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기금이 갖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구로서의 성격을 개발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6대 도시 기금을 비교하는 기초 자료를 생산하였다는 점이다. 아울러 실무적 차원에서는 기금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타지자체와 비교한 기금분석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해당 지자체의 기금특성과 성격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 참 고 문 헌

- [1] 허명순, *지방기금관리실태분석*, 감사연구원, 2012.
- [2] 이해경, 설훈, 전주상, *이민자 통합기금설치 및 운영효율화방안*, 법무부, 2009.
- [3] 서옥순, *부산지역 대졸자의 지역이동 및 청년 고용활성화방안*, 부산발전연구원, 2011.
- [4] 홍수완, 윤별아, *사업성기금의 수입지출분석과 재정위험*, 감사원감사연구원, 2015.
- [5] 김종세, “지방자치단체기금의 효율적 관리방안,” 법학연구, 제42집, pp.25-43, 2011.
- [6] 사회보장위원회 보도자료, 2015.08.10.일자.
- [7]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0806000078>. 2015.08.06.일자.
- [8] 허명순, *지방기금관리실태분석*, 감사연구원, 2012.
- [9] 이삼주, “기금의 특성에 따른 지방기금의 실태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0권, 제4호, pp.87-104, 2009.
- [10] 홍수완, 윤별아, *사업성기금의 수입지출분석과 재정위험*, 감사원감사연구원, 2015.
- [11] 권순현, “지방기금 운용 효율화를 위한 개선과제,” 사회과학연구논총, 제20권, pp.93-132, 2008.
- [12] 대한민국정부, *2015기금운용계획안*.
- [13] <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main.do>.
- [14] <http://www.moi.go.kr/ft/sub/a05/statistics/screen.do>.
- [15] 여영현, “자치단체 기금의 효율화를 위한 운영성과와 특성연구,” 한국행정연구, 제16권, 제4호, pp.167-188, 2007.
- [16] [http://www.index.go.kr/potal/enaraldx/idxField/userPageCh.do?idx\\_cd=2760](http://www.index.go.kr/potal/enaraldx/idxField/userPageCh.do?idx_cd=2760).
- [17] [http://www.index.go.kr/potal/enaraldx/idxField/userPageCh.do?idx\\_cd=2760](http://www.index.go.kr/potal/enaraldx/idxField/userPageCh.do?idx_cd=2760).
- [18]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2004.8.31.일자,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OLD\\_221539&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OLD_221539&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 여성신문, 2009. 9.25.일자. <http://womennews.avansoft.co.kr/news/view.asp?num=41498>.
- [19] 홍미영, 조한나, *부산시양성평등관련 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16.
- [20] 이재원, 김도경, “지방재정의 위기극복을 위한 건전성 확보방안,” 사회과학논총, 제31집, 제1호, pp.229-250, 2012.
- [21] 조세일보, 2016. 10월27일자.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10/20161027307088.html>.
- [22] [http://www.cssf.or.kr/new\\_home/bigsub1/sub6/sub1.asp?no=3](http://www.cssf.or.kr/new_home/bigsub1/sub6/sub1.asp?no=3).
- [23] 김재진, 홍범교, 김경휘, 황보람, *자활기금사용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1.
- [24] 기획예산처보도자료, 2004.8.31.일자.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OLD\\_221539&search](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OLD_221539&search)

BbsId1=MOSFBBS\_000000000028

[25] 부산일보, 2015.5.25.일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0527000093>.

### 저 자 소 개

성 향 숙(Hyang-Sook Sung)

정회원



- 1992년 8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00년 8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여성복지, 다문화, 결혼이민여성, 사회복지기금